

무배당 Chubb 홈가드보험 상품요약서

1. 문답식 상품해설

- Q. 도난에서 일반가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일반가재는 아래에서 정한 각 호의 물건을 제외한 주택내의 가재를 말합니다.
-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 자동차(자동차3륜차, 자동차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사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Q. 보험가입시 보험나이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A.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 Q. 해지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1) 가입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① 무배당 Chubb 홈가드보험은 주택용 화재보험입니다.
②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③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

구분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 (기본계약)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지진패키지보장 - 도난(주택/일반가재)보장특별약관 - 운전자배키지보장특별약관 - 화재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 - 임차자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 - 전세금보장특별약관 - 풍수재보장특별약관(비특수건물) - 풍수재보장특별약관(특수건물) -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특별약관	10년만기	20~70세	전기납	월납 연납
- 화재발급금보장특별약관 - 보이스피싱손해보장특별약관 - 법률비용보장특별약관	10년만기	20~70세		

-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보장특별약관				
-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보장특별약관				
- 홀인원비용보장특별약관				
- 알바트로스비용보장특별약관				

- ④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2) 상품의 특이사항
① 적용이율 : 2.5%(연복리)
②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3.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지진패키지보장		
(1) 화재손해보장	화재손해(주택)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지진패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장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주택의 경우폭발,파열 포함)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보장 ※ 잔존물제거비용 : 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실는 비용
(2)붕괴·침강·사태 손해보장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지진패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장
(3)소요노동쟁의 손해보장	소요·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및 그 위험으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지진패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장
(4)지진손해보장	지진으로 인해 보험목적에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무너져내림, 파문함등의 손해, 손해 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지진패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장 ※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도난(주택/일반가재)보장특별약관

(5)도난(주택/일반가재)보장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	------------------

운전자배키지보장 특별약관

별급보장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별급액을 확정판결받은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지급	2천만원 한도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3천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보장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천만원 한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보장	자동차를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망	1억원 한도
		부상	2천만원 한도
		후유장애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억원 한도		
인차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비례보상	
풍수재보장특별약관 (비특수건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제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풍수재보장특별약관 (특수건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제 또는 수재 그리고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수건물이란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말함.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장특별약관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1인당 보상)	사망	8천만원
		부상	1,500만원 한도
		후유장애	8천만원 한도
화재벌금보장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피보험주택에서 사용하는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특약가입금액(100만원)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보이스피싱손해보장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법률비용보장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보장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홀인원비용보장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최초 1회한)
알바트로스비용보장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Albatross)를 행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최초 1회한)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계약)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지진·파괴·지보장, 도난(주택/일반가계)보장특별약관, 운전자폐키지보장 특별약관(벌금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화재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 인차자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 풍수재보장특별약관(비특수건물), 풍수재보장특별약관(특수건물), 화재벌금보장,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보이스피싱손해보장, 법률비용보장,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보장,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보장, 홀인원비용보장, 알바트로스비용보장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적용이율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5%입니다.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3) 적용위험률

보장위험	적용위험률<단독주택 1급>	
	남자	여자
화재손해	0.000190	
도난손해(일반가재)	0.000455	
붕괴·침강·사태손해	0.000125	

【적용위험률이란?】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5.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상품군별 평균사업비)×100”

보험가격지수(%)<아파트 1급(100m2), 10년만기 전기납>	118.7
-------------------------------------	-------

【보험가격지수란?】 :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6.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7.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지환급금

- 가입기준 : 월납 12,430원, 10년만기, 10년납, 아파트, 1급, 85m²
- 보통약관 :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지진패키지보장(건물) 2.1억원,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지진패키지보장(일반가재) 6천만원
- 특별약관 : 도난(주택/일반가재)보장특별약관 1천만원, 화재배상책임보험보장 특별약관 5억원, 풍수재보장 특별약관(특수건물) 2.1억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원)	해지환급률(%)
1년	149,160	0	0.0
3년	447,480	0	0.0
5년	745,800	0	0.0
7년	1,044,120	0	0.0
10년	1,491,600	0	0.0

(3)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등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